

수원지방법원 2022. 12. 22 선고 2021나104846 판결 [계약금 반환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트

담당변호사 이종찬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헌

담당변호사 제갈철

변 론 종 결 2022. 11. 10.

판 결 선 고 2022. 12. 22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1. 11. 10. 선고 2021가소 46264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6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는 2019. 5. 10. 피고와 사이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비공사 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)을 체결하고, 2019. 5. 14. 피고에게 계약금 16,5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나. 이 사건 계약서에는 '공사기간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공사계획신고 수리 후 150일 이내에 모듈, 인버터, 구조물 설치 및 전기공사를 하여야 한다(단 한국전력 소관인 외선 인입공사, 변압기 설치 등의 기타 공사는 공사기간에서 제외한다).'고 규정하고 있다.

다.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다가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양광 발전 시설의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, 2021. 4.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6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. 7. 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주장의 요지

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용을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외선 인입공사, 변압기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

하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위 공사에 6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였다. 이에 피고의 직원 C은 원고, D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혔고 원고와 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의 착공은 한국전력공사의 인입공사 등이 이루어진 후에 하겠다고 합의하였다.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것이 아니다.

나. 판단

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로, 을 제10호증(D와의 태양광발전 설비공사계약서), 을 제11호증(C의 진술서), 을 제12호증(C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)을 제출하고 있으나,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에도 6년이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계약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D와의 계약서와는 달리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점, C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에도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C이 ‘계약금 요청하셨잖아요? 일단은 대표님께서 50%만 먼저 입금하면 안되겠냐? 기다려보면 안되겠냐? 이렇게 말씀드려 보래요.(이하 생략)’이라고 이야기하고 원고는 ‘그런데 5, 6년이 지나서 한다고 하면 저는 퇴직 후에 그 빚을 가지고 태양광을 해야 되고 의미가 없다.’고 이야기 하는 등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에서도 계약금 중 일부만 먼저 지급하는 방법 등을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영호, 판사 이경선, 판사 김리사